

의안번호	2211199
의 퇴 인	김도읍의원
회 답 일	2025. 7. 28.
추계번호	25C3515

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국제교류 지원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억원, 2031년 5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6억원(연평균 5억 2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100	-	-	-	-	100	20
국제교류 지원 (안 제27조)	500	500	500	500	500	2,500	500
합계	600	500	500	500	500	2,600	5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7조(실태조사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의 체계적 진흥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레저스포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14조(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검사)	레저스포츠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·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(이하 “정기안전검사”라 한다)를 받아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18조(안전교육)	레저스포츠업자, 안전관리담당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레저스포츠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19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	국가는 레저스포츠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(제1항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(제2항),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6	안 제25조(예산 지원)	국가는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확보 등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26조(단체 등 지원)	국가는 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 개선 및 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27조(국제교류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
2	안 제7조(실태조사)	×	· 실시 중
3	안 제14조(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검사)	×	· 실시 중
4	안 제18조(안전교육)	×	· 실시 중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5	안 제19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	×	· 비용추계 곤란
6	안 제25조(예산 지원)	×	· 실시 중
7	안 제26조(단체 등 지원)	×	· 비용추계 곤란
8	안 제27조(국제교류 지원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실태조사(안 제7조),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검사(안 제14조), 안전교육(안 제18조) 및 예산 지원(안 제25조) 등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, 현시점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참고로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재정수반요인	현행 사업(2025년)
실태조사(안 제7조)	-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(190백만원)
안전검사(안 제14조) 안전교육(안 제18조)	- 레저스포츠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(434백만원)
예산지원(안 제25조)	- 레저스포츠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(142백만원)

-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- 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 재정소요 발생 예상
-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진흥 기본계획(2024~2028년)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023년도에 9,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음

[표 3]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100	-	-	-	-	1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국제 교류 지원(안 제27조)

- 제정안에 따라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경우,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제교류 지원을 위해 매년 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
 -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을 위해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억 1,000만원, 4억 5,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4] 국제교류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국제교류 지원(안 제27조)	500	500	500	500	500	2,5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전문인력의 양성(안 제19조) 및 단체 등 지원(안 제26조)

- 전문인력의 양성은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을 정하도록 도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고, 단체 등 지원은 선언적·권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